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5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이병도의원 외 17명 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4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병도 의원)

### 1. 제안이유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

- 장애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도모를 위하여 ‘17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안되었음.

#### 2 주요사항 검토

#####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 조례상에 제5조의2(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조의2(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u> <u>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 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개요

-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sup>1)</sup>, 제30조의2<sup>2)</sup>(장애인 가족지원)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의 사회적·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 서울시에서는 '11년부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이던 가족지원 업무를 '17년 민간영역으로 이전하였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 공모를 통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음.

###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개요 >

- **사업규모** : 총12개소 / 광역1개소, 기초11개소
  - ('17년 신설) 광역(서울시), 광진, 동대문, 은평, 마포, 강서 등 6 개
  - ('18년 신설) 성동, 도봉, 서대문, 금천, 서초, 강남 등 6개
  - ('19년 추진중) 용산, 중랑, 성북, 구로, 동작, 강동구 등 6개
- **운영인력** : 광역 5명이상(무급센터장1, 직원4), 기초 3명이상(무급센터장1, 직원3)
- **사업방식**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19년 예산** : 총 2,065백만원(기초 1,765백만원, 광역 300백만원)

1)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9년 7월말 기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총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와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년 25개 전 자치구로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임.

<광역,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내용>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괄</li> <li>-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li> <li>- 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li> <li>- 가족지원서비스 개발·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돌봄서비스 제공</li> <li>- 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li> <li>-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li> </ul>

다.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장애인복지정책과)는 기 추진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인바, 이에 원안 동의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85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병도, 송아량, 이정인, 김화숙,  
우형찬, 이영실, 송재혁, 김동식,  
김용연, 김상훈, 유 용, 김태수,  
김소양, 채유미, 김혜련, 서윤기,  
오현정, 봉양순 의원 (18명)

## 1. 제안이유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5조의2(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u>  <u>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u>  <u>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u>  <u>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u>  <u>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u>  <u>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u>  <u>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u>  <u>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u>  <u>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p><u>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u>  <u>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